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356
----------	------

제안년월일 : 2020년 2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최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30호), 이광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31호), 송정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32호),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25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4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며, 수도요금은 이사 당일까지의 수도계량기 지침으로 정산을 해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현재 요금관리시스템으로 이사 당일 신청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27조제3항, 제27조제3항4호)
- 나.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될 경우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을 “이사 당일” 즉시 수도요금을 분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 다.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 라.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 마.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 바.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삭제)
- 사. [별표 4]를 단순화 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상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를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2항 중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를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제4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제43조제4항 본문 중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를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제수수료, 보증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사용료 또는 분담금”를 “수도요금”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효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 략)</p> <p>9.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u>상수도사용료</u>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u>수도요금</u> ----- ----- -----.</p>
<p>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u>지나치게 많이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1. ~ 3. (생 략)</p> <p>4. <u>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u></p>	<p>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기타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u></p>	<p>제3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으로 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수도사용자 등이</u> -----</p>

수 있다.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10. (생략)

②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략)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 .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

④ -----
---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
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경우 중 혼용사용은 별표 2의 효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혼용사용량 중 효율이 높은 업종에 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높은 효율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급수를 몰래 쓴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

⑤ ----- 보증금액 -----

-----.

제44조(과태료) ① -----
----- 수도요금 -----

-----.
-----.

<삭 제>

② -----
-----.

③ -----

-----.

④ -----

-----.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시설소화전 무 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 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택 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별표 4]

과태료 처분 기준표(제44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 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시설소화전을 소 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효율이 높은 업종 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 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 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택거 또는 무단이 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을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